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법·제도 담당

제목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매출액 범위 산정 관련 질의 결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산정 시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매출액 별도 산정과 관련하여 협회가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매출액 범위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하므로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매출액만 구분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

붙임 :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이사장



대리 김정훈 기술지원팀장 한인성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이민석  
회장 강경진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1 - 185 (2021. 6. 15)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 민원 인쇄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05-1162097
신청일	2021-05-31 18:33:30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예

### 민원 내용

제목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매출액 범위 산정 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내용	<p>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폐기물최종처분업 매립시설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아래-</p> <p>가. 개요                      ○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허가기관은 분리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산정토록 되어있음</p> <p>&lt; 「폐기물관리법」 &gt;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나. 질의 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산정 시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매출액만 해당된다고 명시한 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 매출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지?

다. 협회 의견

○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허가기관이 각각 구분되는바,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매출액 산정도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끝.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6-0007392
접수일	2021-06-01 09:18:43
담당자(연락처)	박성수(044-201-7369)
처리예정일	2021-06-09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1-06-07 21:27:58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162097)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역(지방)청, 지자체 등 처분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이때 연평균 매출액은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매출액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업의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영업정지를 같음하는 과징금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박성수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